

의안번호	2202677
의 퇴 인	송석준 의원
회 답 일	2024. 10. 22.
추계번호	24B267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및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피해자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정부가 그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97억 5,900만원(연평균 79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안 제30조)	8,222	8,085	7,949	7,817	7,686	39,759	7,952

주: 1.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의 비중이 유지되고, 해당 사고 건수 중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사고의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고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안 제30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 한도에서, 제4호 및 제5호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건 중에 제5조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등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음. 다만, 피해자의 청구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 한함(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설> 5.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피해자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설> ※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을 기존 인적 피해에서 물적 피해까지 확대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안 제30조)	○	□ 정부는 법 제30조1)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등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비를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도 보상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소요비용을 추산함 ○ 추계대상: 현행 정부보상사업 대상자의 물적피해건수 ○ 추계단가: 사고건 당 평균 대물 손해액 □ 개정안에 따른 물적피해의 범위, 물적피해건수에 대한 실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인적피해건 대비 물적피해비율을 적용하고, 사고건당 물적손해액으로 보상금액을 추정한 결과이므로 실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등의 피해로 인한 현황과는 다를 수 있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제37조제1항은 현행법 제5조제2항²⁾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징수하여 개정안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담금 징수 대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분담금 징수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최근 5년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재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 최근 5년(2019~202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재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재원				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정부		
	분담금	기타	소계		집행	실집행
2019	322	288	611	—	201	171
2020	337	152	489	—	181	167
2021	344	163	508	—	176	156
2022	336	228	565	—	202	170
2023	321	275	595	—	207	186

자료: 국토교통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부상한 경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및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및 해당 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비용
 - 현재 정부보상사업은 보상대상 피해범위를 뺑소니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에 한정
 - 개정안은 인적 피해보상만 이뤄지고 있는 정부보상사업에 물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5년간 정부보상사업 대상자수로부터 추정한 물적 피해 건수에 물적 피해 보상금액을 곱하여 추산함
 - － 정부보상대상 피해자의 재물 손해 물량에 관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자동차보험기관이 처리한 교통사고의 인적피해건수 대비 대물피해 비중(1.66배, 2022년 사고기준)⁴⁾을 적용하여 대상 건수를 추정함
 - － 사고별 물적 피해보상 단가는 현재 추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도로교통공단 「대물피해」 자료의 1건당 대물피해 손해액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정부보상사업의 착수 방식을 기존 “피해자의 청구 또는 정부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를 보상하던 방식에서 “피해자의 청구 또는 정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하되, 피해자의 청구에 따른 보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정부보상사업 중 피해자의 청구에 따른 보상의 경우 경찰서를 통한 피해사실입증 확인 이후에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으로 인한 정부보상사업 방식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중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 건수와 이중 정부보상사업의 대상이 된 건수는 다음과 같음

4) 도로교통공단, 「2022년 도로교통사고의 추계와 평가」, 2023. 12.

[표 3]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 중 정부보상사업 건수: 2019~2023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전체 교통사고 건수(A)	229,600	209,654	203,130	196,836	198,296	207,503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B)	12,542	12,192	11,855	10,860	10,660	11,622
－ 무보험 사고건수(B1)	4,903	4,534	4,081	3,814	3,715	4,209
－ 뺑소니 사고건수(B2)	7,129	7,418	7,492	6,778	6,677	7,099
－ 낙하물 사고건수(B3)	510	240	282	268	268	314
비중(B/A)	5.5%	5.8%	5.8%	5.5%	5.4%	5.6%
정부보상 건수(C)	3,196	3,018	2,568	2,164	2,586	2,706
－ 무보험 건수(C1)	1,469	1,596	1,451	1,207	1,696	1,484
－ 뺑소니 건수(C2)	1,727	1,422	1,117	798	828	1,178
－ 낙하물 건수(C3)	0	0	0	159	62	111
비중(C/B)	25.5%	24.8%	21.7%	19.9%	24.3%	23.3%

자료: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추계대상) 본 추계에서는 현행 정부보상사업 피해자의 대물피해 건수를 추정하고, 대물피해 교통사고 1건당 평균 물적 피해보상 단가를 곱하여 정부보상액을 추정함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건수의 연평균증가율($\Delta 3.6\%$)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중 전체 교통사고 건수를 추산
 -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중 평균 비중 5.6%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정부보상사업 대상 피해자 수는 최근 5년간 전체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 대비 정부보상사업 건수의 비중 23.3%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물적피해 건수의 추정은 2021년 자동차보험기관이 처리한 교통사고의 인적

- 피해 건수 대비 대물피해 비중(1.66배=1,681,986/2,790,497)을 적용함
- 정부보상대상 인적피해 대비 물적피해 건수 비중 1.66배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2022년 자동차보험기관이 처리한 교통사고 중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지급현황
(단위: 명, 건수)

		인원(건수)
인적피해	사망	2,027
	중상	27,761
	경상	519,620
	부상신고	1,132,578
	소계	1,681,986
물적피해	차량	1,467,675
	대물	2,790,497
	소계	4,258,172
계		5,940,158

자료: 도로교통공단, 「2022년 도로교통사고의 추계와 평가」, 2023. 12.

□ 이상의 가정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정부보상사업 대상자의 물적피해 건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5]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 중 정부보상사업 물적피해 건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건,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전체 교통사고 건수	184,276	177,642	171,247	165,082	159,139	857,385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건수	10,319	9,948	9,590	9,245	8,912	48,014
정부보상 피해 건수	2,404	2,318	2,234	2,154	2,076	11,187
정부보상 피해자 물적피해 건수	3,991	3,848	3,709	3,576	3,447	18,5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물적피해보상 단가) 정부보상사업 피해자의 물적피해 보상금은 대물피해 교통사고 1건당 평균 손해액을 준용하며, 사건 1건당 평균 손해액(190.0만원, 2022년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대물피해 보상한도를 법 제5조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등의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향후 발생할 대물보상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본 추계에서는 대물피해 교통사고 1건당 평균 손해액을 참고하여, 사건 1건당 피해보상금을 추정함
 - 도로교통공단(2023)의 「2022년 도로교통사고의 추계와 평가」에 따르면, 대물피해 교통사고 1건당 평균 손해액은 190.0만원이며(2022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산

[표 6] 대물피해 발생건수와 손해액

구 분 업 종	평균유효대수 (대)	사고건수 (건)	사고율 (%)	손해액 (천원)	사고1건당 평균손해액 (백만원)
사업용	972,627	200,849	20.7	501,549,742	2.497
비사업용	23,478,606	2,589,648	11.0	4,801,565,111	1.854
계	24,451,233	2,790,497	11.4	5,303,114,853	1.900

자료: 도로교통공단, 「2022년 도로교통사고의 추계와 평가」, 2023. 12.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무보험·뺑소니·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물적 피해도 보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물적피해건수(A)	3,991	3,848	3,709	3,576	3,447	18,571
보상금 단가(B)	2.06	2.10	2.14	2.19	2.23	—
합계(A×B)	8,222	8,085	7,949	7,817	7,686	39,759

주: 1.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의 비중이 유지되고, 해당 사고 건수 중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사고의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고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건수의 비중이 유지되고, 해당 사고 건수 중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사고의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고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으로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